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별정직공무원 정의에 ‘보좌관’ 등 명시〉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5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명칭이 현실에 맞게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변경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서’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도 현실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직명을 명시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2호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 중 현행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종류를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별정직공무원: <u>비서관·비서 등</u>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생략)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u>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u>비서관·비서</u> 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 ----- ----- <u>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u> ----- ----- ----- -----

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¹⁾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헌법기관 또는 행정부 각각의 규정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국회인사규칙」 및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법원(「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및
행정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는 각각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국회의 경우 종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711호)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종류를 보좌관(4급상당), 비서관(5급상당) 및 비서(6~9급상당)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5일부터 시행된 동 법률(법률 제18719호)에서는 5급상당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보좌관(4급상당), 선임비서관(5급상당) 및 비서관(6~9급상당)으로 보좌직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국회 내부 별정직에 관한 규정인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중 보좌직원을 규정한 조항 또한 2023 .4. 28. 개정을 통해 종전

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	정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선임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보좌관, 비서관, 비서에서 선임비서관이 추가되고 비서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³⁾

이와 같은 보좌직원 체계 및 관련 법령의 개편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한 조문 중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보좌관” 및 “선임비서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 보좌직원 체계를 법률에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간 용어와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은 2022. 1. 19. 일부개정을 통해 종래 정무직·별정직공무원을 개별 직위별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의 ‘비서관’·‘비서’는 별정직공무원의 대표적인 직위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직위의 명칭은 국회뿐만 아니라 개별 행정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도 채용절차 등에 해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을 포함한 행정부

3)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규에 따라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국회의원·사무총장·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교섭단체대표의원 행정비서관,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이하 “보좌직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용절차 등) ⑤ 국회의원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중 1인이 운전업무를 겸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겸임신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당연퇴직) ② 국회의원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내의 다양한 별정직 업무를 포괄하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 아울러, 향후 개별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체계나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법률상 정의규정에는 일정한 포괄성 또는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 정의 방식》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수석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보좌직원 체계를 반영하여 ‘보좌관’·‘선임 비서관’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특정 직위의 명칭을 법률상 정의규정에 추가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개념을 다시 열거식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직위체계 변경에 대한 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별정직공무원의 예시로 직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는 '보좌관'을 별정직공무원의 예시로 추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선임비서관의 경우에는 '선임'이 직급 등의 상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서관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